

2023년 하반기 광진구 서울 동행일자리(공공근로)사업 참여자 모집

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5. 23.

광 진 구 청



1. 접수기간 : 2023. 5. 19.(금) ~ 5. 30.(화) [평일, 09:00 ~ 18:00]
2. 사업기간 : 2023. 7. 10.(월) ~ 12. 8.(금) ※ 사업운영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
3. 모집인원 : 282명
4.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5. 사업구분 : 일반사업 – (사업개시일 기준) 만 18세 이상
6. 신청방법

-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개 기재해야 함. (모집내역 참조)
- 신분증 지참,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→ 사업 신청서 작성·접수
 - *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
 - * 본인 희망사업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·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
 - * 서울시와 광진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신청시 자동 탈락)
- 구비서류

[필수제출 서류]

- ①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 *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 - 본인(배우자)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시 선발 불가
-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
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
[선택제출 서류] : 가점대상 \Rightarrow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

①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(F2,F5,F6),

장애인 및 가족 등

② 여성세대주(가장)

- 단독세대인 경우 가점대상이 아니며,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.

7. 신청자격

○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,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배제사유 없는 자로

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

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거주민임이 증명된 자

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가족 재산(토지, 주택, 건축물, 자동차 등)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등(재산의 가액에서 6천9백만원 기본 공제)

참여배제 대상 (접수일 기준)

- ▶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(포기서 징구 시 가능), 실업급여 수급자
- ▶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 재산액)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※ 가족의 범위 :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
- ▶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억원 초과인 자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기준중위소득 75%
1인	1,558,419
2인	2,592,116
3인	3,326,112
4인	4,050,723
5인	4,748,016
6인	5,420,986

- 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- 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- ※ 재산은 주택, 건축물, 토지,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 확인, 단, 지역별 주택가격,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,900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
- ▶ **1세대 2인 참여자**
- ▶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 - ※ 60세이상, 장애인·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서울 동행일자리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 - ※ 참여기간 제한 포함 공공일자리사업(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, 방역일자리사업, 어르신일자리사업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, 장애인일자리사업 등)
- ▶ **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**
- 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
- 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- ▶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- ▶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- ▶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8.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 되더라도 사업에 선발·참여하지 못할 수 있음

- 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과 재산보유액, 가구소득, 세대주여부, 부양가족수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가점대상, 사업별 고려요소 등
- 참여자 선발 기준표 참조(붙임3)

9. 임금 및 근로조건

- 임금 : 1일 4시간 근무 시 39,000원, 식비 6,000원 별도
1일 3시간 근무 시 29,000원, 식비 6,000원 별도
- 근로조건 : 주 5일, 1일 3-4시간 근무, 만근 시 주·연차수당 지급
※ 사업특성상 주말,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(단, 주중 대체 휴무)
-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10. 선발자 발표 : 2023. 7. 5.(수) 선발자는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

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번호 및 유선전화) 기재

- 합격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'채용정보'에 게시예정

11. 문 의 :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(☎02-450-1520) 또는 동주민센터

12. 유의사항

- 가.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,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.
- 나.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, 누락,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다.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있으며,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.
- 라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.
- 마. 선발자는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을 수 있음.
- 바. 본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 공공기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(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, 노인일자리사업 등)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환수
- 사.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, 채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 가능.
- 아.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합격자 제외)되며,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됨.

- 붙임 1.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(공공근로) 사업별 모집내역 1부.
2. 신청구비서류 각 1부.
3.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. 끝.